

## 중기청, 제조물책임(PL) 표준계약모델 시행

본 자료는 중소기업청에서 PL관련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제조업체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완화에 따른 표준계약모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L관련 표준계약모델의 주요내용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거래계약의 문제점 등을 요약하여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1. 제조물책임(PL) 표준계약모델 개발 배경

중소기업청(廳長 李錫瑛)은 PL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키로 하였다.

이 표준계약모델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영세 납품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PL사고 발생시에도 거래기업이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거래관계가 원만히 지속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이 법무법인 세종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3개월동안 실태조사와 연구과정을 거쳐 하도급, 판매, 설치(시공), 운송·보관, 수입, 수출 등 6개 분야로 구분·개발하였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모델은 현재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를 보완하여 선택적으로 인용 할 수 있도록 계약조문을 구성하였고 ① PL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계·제조·표시결함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안 ② PL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방안 ③ PL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방안 등을 계약조문에 반영하고 있다.

업종별 PL센터(14개), 중소기업협동조합(200개), 수탁기업협의회(70개), 전국 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업종단체를 통해 적극 활용토록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 2. PL관련 표준계약모델의 주요내용

- 1) 하도급거래 계약모델(위탁기업 ↔ 수급기업)

- 
- 제조위탁기업은 수급기업에게 물품 제조에 필요한 사양서를 제시도록 규정
  - 위탁기업이 제시한 제조사양서에 부합되도록 물품을 제조·납품한 경우 설계결함의 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
  - 납품후 1년이내에 감춰진 하자가 발견될 경우 수급기업(제조자)이 책임을 부담
  - 다만,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는 6개월 이내로 단축
  - 수급기업(제조자)의 책임에 속하는 중대한 하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적용
  - 수급기업과 위탁기업의 제조물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
  - 수급기업이 납품한 부품을 사용하여 위탁기업이 완성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위탁기업이 그 손해를 배상한 후 수급기업이 납품한 부품과 당해 결함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
    - 다만, 구상권 행사금액은 제품의 성질, 가격, 결함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청구
  - 다음의 경우는 수급기업의 책임을 면제
    - ① 수급기업이 제품을 위탁기업에게 공급한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품의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② 당해 결함이 설계에 관한 위탁기업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당해 결함의 발생에 대해 수급기업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 ③ 위탁기업이 제품에 대해 통상 예견되는 고장발생률, 고장 행태를 고려한 제품의 안전설계를 게을리 한 경우
    - ④ 당해 결함이 그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됨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 당해 결함이 제품의 개조 또는 수급기업이 정한 사용,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제조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 당해 결함이 제품을 위탁기업에게 공급한 후에 발생한 경우
  - 수급기업이 납품한 제품 또는 부품이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제조 또는 막대한 물적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어지는 경우에 사전에 수급기업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부품제조자인 수급기업에게 제조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수급기업이 이를 배상한 경우 수급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초과한 금액은 완성품 제조자인 위탁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
  - 클레임 발생통지 및 원인규명책임은 위탁기업(완성품제조자)이 부담
  - 위탁기업(완성품제조자)은 고객으로부터 품질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그 클레임의 원인이 수급기업(부품제조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수급기업에 통지하고 상호협력하여 원인규명을 실시한 후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급기업과 비용부담 비율을 협의
    - 이때 사고원인 규명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업(완성품제조자)이 부담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기여도에 따라 배상금을 분담
  - 분담비율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의해 결정
  - PL보험은 위탁기업(완성품제조자)과 수급기업(부품제조자)이 각자의 비용으로 자율의사에 의해 가입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탁기업이 수급기업에게 특정보험사의 PL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수급기업이 가입한 PL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위탁기업을 포함토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

- 거래기업간의 PL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토록하기 위해 상사중재기관 또는 분쟁조정기관 활용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 PL분쟁 발생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분쟁해결방법을 규정

## 2) 제품 매매계약 모델(제조업자 ↔ 구매(유통)업자)

- 제품의 용도외 사용, 임의 개조·수리 등으로 인해 PL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구매(유통)업자가 책임을 부담

○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구매(유통)업자에게 전달(사용설명서, 경고라벨 등을 활용)

- 제품 구매(유통)업자는 동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제조업자가 제시한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전달

○ 위와 같은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품구매(유통)업자가 PL책임을 부담

- PL사고 발생이 쌍방책임에 속하는 경우는 그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 토록하고 기여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 또는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

○ PL사고의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교섭력의 차이에 의해 불공평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것

## 이 바람직

- 제조업자는 PL보험을 가입하거나 적정수준의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토록 규정

○ 제품의 안전성, 사고발생의 개연성, 예상되는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희박한 경우에는 PL보험을가입하지 않고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 3) 설치(시공)계약 모델(제조업자 ↔ 설치업자)

- 제조업자는 제조물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설치업자에게 교부토록 규정

○ 설치(시공)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PL사고는 설치(시공)업자가 부담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 및 설치기준의 미비로 인한 사고책임을 부담하고 설치기준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설치업자가 부담토록 규정

- 설치업자는 자기의 하도급업자에게 클레임 대응사무를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

## 4) 운송·보관계약 모델(제조업자 ↔ 운송·보관업자)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송·보관 중에 준수하여야 할 조건, 주의사항 등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운송·보관업자에 제공토록 규정

○ 운송·보관상태에 따라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속성이 변화되어 발생되는 사고를 사전예방하는데 기여

- 제조업자가 제시한 운송·보관상의 주의 사항, 매뉴얼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 한 경우는 운송·보관업자가 책임을 부담
- 제품 공급 시에는 결함이 없었고 운송·보관 중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운송·보관업자는 운송·보관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을 보관

#### 5) 수입계약 모델(외국 제조업자 ↔ 국내 수입업자)

- 외국 제조업자는 수입업자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PL사고처리에 적극 협조도록 규정
- 사고원인규명, 손해배상금액의 전보, 거래기업과의 분쟁해결 등은 국내 소재기관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 제조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수입업자의 국내에서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PL보험을 가입토록 규정

- 외국 제조업자가 가입하는 PL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수입업자를 포함토록 규정
- 외국에서의 배상금 전보가 어려움을 반영

- 보험증서를 수입업자에게 제출하고 수입업자의 승낙없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변경 하지 못하도록 규정

- 외국 제조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만족할 만한 PL보험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독자적으로 PL보험에 가입하고 그 비용은 외국의 제조업자가 부담토록 규정

#### 6) 수출계약 모델(국내 제조업자 ↔ 외국 수

입업자)

- 수출대상국의 PL법을 숙지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약을 체결

-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원칙(수출대상국)
- 제조물책임 사고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

- 현지국의 면책규정

- 소송방어를 위한 문서의 보관 및 제공의무
-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이용기관 및 비용부담 포함)

- PL사고 및 클레임에 대한 신속한 통지, 처리절차 합의에 관한 사항
- PL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액에 관한 사항
- 현지의 피고측성향 변호인의 소개 및 알선에 관한 사항

- PL보험의 가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외국 바이어의 의무 규정 등

### 3. 현재 통용되고 있는 거래계약의 문제점

- 1) 하도급거래계약(갑 : 완성품제조업자, 을 : 부품제조업자)

계약사항	문제점
○ 원·부자재의 하자 및 품질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책임(민·형사 포함)을 (을)이 부담토록 규정	○ (을)의 납품이후 (갑)의 부주 의 등으로 인해 발생 되는 하자 및 결함에 대한 책임 규정이 미비되어 있으며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
○ PL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이 무조건 PL보험을 가입토록하고 (갑)을 피보험자로 포함하는 경우	○ 제품의 사고위험,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PL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보험료는 (을)이 부담하면서 (갑)을 피보험자에 포함토록 하는 것은 부당

## 2) 제품 판매계약(갑 : 유통업자, 을 : 제조업자)

계약사항	문제점
○ (을)은 계약일로부터 00일 이내에 PL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토록 규정	○ 사고발생의 개연성, 제품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PL보험을 가입토록 하는 것은 무리
○ (을)이 제조납품한 제조물로 인해(갑) 또는 (갑)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전부를 (을)이 배상토록 규정	○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을)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하는 것은 부당
○ (갑)이 (을)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을)이 납품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	○ (을)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도 지급한 대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

## 3) 설치(시공)계약

- 설치(시공)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PL관련 책임조항 부재

## 4) 운송 · 보관계약

- 운송 · 보관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PL관련 책임조항 부재

## 5) 수출 · 입 계약(갑 : 일본 수입업자, 을 : 한국 제조업자)

계약사항	문제점
○ (을)이 제조한 상품은 (갑)이 정한 사양서 및 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 없음
○ (을)은 보증기간 내에 품질불량이 발견된 경우 그 불량이 (갑)의 고객의 부당한 취급 또는 자연재해 등 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품으로 교체한다.	○ 없음
○ (을)이 제조한 상품으로 인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력하여 처리한다.	○ 없음
○ 제3자의 손해 발생이 (을)이 제조한 상품의 설계 · 제조 · 표시결함에 기인하는 경우 (을)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원인이 (갑)의 설치 · 시공 또는 A/S에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수입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사양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의해 제조된 물품을 자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설계결함과 표시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 책임은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발생원인이 쌍방책임에 속하는 경우는 결함발생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